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41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이정문 · 김용만 · 이연희
문진석 · 이성윤 · 김남근
한민수 · 이학영 · 김현정
김남희 · 강준현 · 이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금지청구 등) ①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2(금지청구 등) ①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